

프랑스의 최저임금제도

장신철 (주 OECD대표부 노무관)

■ 머리말

프랑스 최저임금은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로 불린다.¹⁾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법전(Code du Travail)속에 최저임금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는 OECD 3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갖고 있으며 매년 평균임금 상승률을 상회하여 인상되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노동·사회정책 보호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은 아니며 이는 프랑스가 중시하는 가치의 하나인 연대(solidarity)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가 갈수록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EPL), 관대한 사회보험급여 등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

* 본 자료는 2007년 4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필자가 프랑스 고용사회연대주택부를 방문하여 프랑스 최저임금 담당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본 글에 인용된 표 및 그림은 고용사회연대주택부의 내부자료이다.

1) 최저임금의 시행은 1970년이지만, 그 이전에 1950년부터 SMIG(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라는 최저보장임금제가 시행되어 왔다. 최저임금은 프랑스가 30년에 걸쳐 (1945~1975년) 이룬 소위 <번영의 30년>에 따른 혜택을 저임금근로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SMIG가 기능했던 1950~60년대에는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두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6일 대통령에 당선된 중도우파의 사르코지는 “강한 프랑스, 강한 유럽”을 외치면서 과감한 자유시장 정책 확대와 사회보장 개혁, 근로자보호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대한 최저임금제도도 다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몇 가지 항목 중심으로 프랑스의 최저임금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최저임금결정방식

각국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① 임금위원회방식 ② 법정방식 ③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적용방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프랑스는 임금위원회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를 두지 않고 노사의 의견을 한 차례 청취한 후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프랑스의 고용사회연대주택부는 6월에 한 번 노사정으로 구성된 ‘단체협상위원회(Commission National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회의를 주최해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에 대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후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정부 시행령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권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다. 그 결과 노사간 협상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공식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힘 겨루기와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겠다.

■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지만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로 결정된다. 최

저임금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① 소비자물가 상승률 ②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 ③ 정부 재량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결정된다. 소비자물가지수(담배류 제외)는 바로 이전 측정된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2% 이상 상승된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 이상)이 반영된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이 적용된다(노동법전 L. 141-3조).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계산법은 아래의 ①, ②, ③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프랑스 최저임금 인상시 고려 요소

- ① 도시근로자(가장)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담배류 제외) 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 ② 근로자 기본 시급률 (Taux de salaire horaire de base ouvrier [SHBO])에 대한 구매력상승률의 1/2
 - * 구매력 상승률 = 근로자 기본 시급율 인상률 - 물가상승률
 - * 구매력 상승률은 노동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측정
- ③ 정부의 재량에 의한 인상률(Coup de pouce)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률이란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여타의 제반요소 등을 고려해서 통계상으로 제시되는 ①, ②번 항목에 더하여 정부가 추가 인상률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인상률에 대해 노사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에 불만을 품고 노동계가 파업을 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률 폭이 꽤 높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원칙상 1년에 한 번 조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가 어느 3개월 동안 2%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그에 연동되어 즉시 인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우 1년에 네 번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표 2>는 2001년 이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준다.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27 유로, 월 환산 1,254 유로로서 2005년 대비 3.04%가 인상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최

〈표 1〉 EU 회원국의 법정 최저임금

(2006년 1월 현재, 단위: 유로)

	2003	2004	2005	2006
터키	189	240	240	331
포르투갈	416	426	437	437
스페인	526	537	599	631
그리스	605	605	668	668
프랑스	1,154	1,154	1,217	1,254
벨기에	1,163	1,186	1,210	1,234
영국	1,106	1,083	1,197	1,269
네덜란드	1,249	1,265	1,265	1,273
아일랜드	1,073	1,073	1,183	1,293
룩셈부르크	1,369	1,403	1,467	1,503
미국	877	727	666	753

*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EU 회원국(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과 노르웨이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되는 월평균 최저임금은 800유로~1,000유로 수준

저임금의 절대액 측면에서는 물론 프랑스보다 높은 국가들도 있지만 그 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2004년 프랑스의 중위임금(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전)이 2,000~2,200유로임을 고려하면 중위임금 대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52~58%에 해당한다. 다른 OECD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 34%, 일본 32%, 벨기에 57%, 영국 45% 등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들은 2007년 5월 프랑스경제검토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프랑스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오히려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²⁾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이 필요한 것은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 최저임금의 저하 방지를 위해 새로운 안전장치를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즉, 2000년 1월 19일

2) OECD, 프랑스 경제검토보고서, 2007년.

〈표 2〉 2001~2006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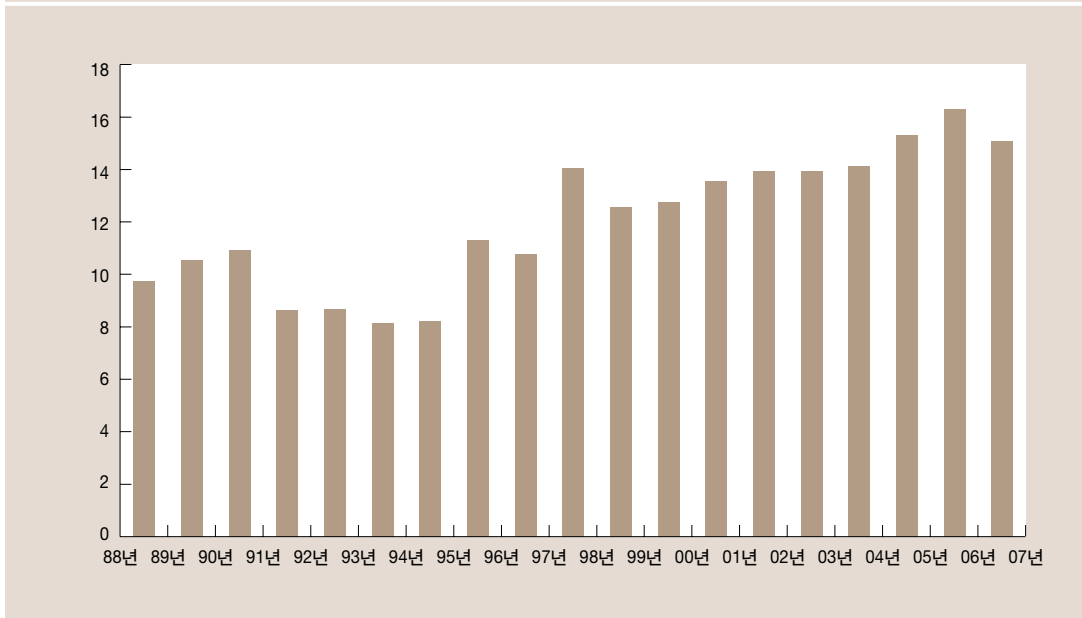
노동법 조항	최저임금			
	시급	월환산급여	인상률	적용일
노동법전 2001-554조 (2001.6.28. 채택)	43.72프랑 (6.67유로)	7,388.68프랑 (1,126.40유로)	+ 4.02% (소비자물가 2.2% + 구매력 1.530% + 정부 0.29%)	2001년 7월 1일
2001년 6월 28일 GMR		151.67시간 기준: 6,631.01프랑		
노동법전 2002-941조 (2002.6.25. 채택)	6.83유로	151.67시간 기준 (1,035.88유로)	+ 2.83% (소비자물가 1.9% + 구매력 0.93% + 정부 0%)	2002년 7월 1일
2002년 6월 25일 GMR		169시간 기준 (1,154.27유로)		
노동법전 2003-564조 (2003.6.27 채택)	7.19유로	1,090.48유로	+ 5.27% (소비자물가 1.6% + GMR을 없애기 위한 가중치 3.67%)	2003년 7월 1일
2003년 6월 27일 GMR				
노동법전 2004-633조 (2004.7.1 채택)	7.61유로	1,154.18유로	+ 5.8% [5.77%] (소비자물가 2.1% + GMR을 없애기 위한 가중치 3.67%)	2004년 7월 1일
2004년 7월 1일 GMR				
노동법전 2005-719조 (2005.6.29. 채택)	8.03유로	1,217.88유로	+5.37% (소비자물가 1.6% + GMR을 없애기 위한 가중치 3.67% + GMR과의 일치를 위해 0.1%)	2005년 7월 1일
노동법전 2006-751조 (2006.6.29. 채택)	8.27유로	1,254.28유로	+ 3.04% (소비자물가 1.9% + 구매력 0.84% + 정부 0.3%)	2006년 7월 1일

* 월 환산 급여는 실질근로시간 169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여임

공포된 ‘Aubry법’ 2차 법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9 → 35시간으로 축소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월 급여수준이 과거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GMR³⁾ (Garantie mensuelle de rémunération)이라는 ‘최저보장월급’ 제도를 도입하여 11.4%의 임금인상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2003년 1월 17일 공포된 ‘피용법(‘Fillon’ Act)’⁴⁾은 2005년 6월 30일까지 GMR을 없애고 하나의 최저임금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위 계산법에 따른 최저임금 재조정을 중지하고, 2003년, 2004년,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보장월급 적용 근로자 비율



2005년 3회에 걸쳐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은 5%대로 크게 상승했으며, 최저임금과 GMR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또한 15%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내역

최저임금에 산입·불산입되는 임금은 <표 3>과 같다. 보너스(상여금)와 성과급은 우리나라의

3) 기업이 언제 주 35시간제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시기를 5단계로 나누어 도입 시기가 빠를수록 최저임금을 소폭 낮추어 주었다. 때문에 2005년 6월까지 프랑스에는 6종의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4) 당시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딴 것이다.

경우 최저임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포함하고 있다. 보너스는 그것을 받는 달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년을 평균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 성과수당과 팀별 성과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기업 전체의 성과급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숙식관련 수당과 현물 제공(기숙사, 식사 등)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으로 보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으나 프랑스는 산입하고 있는 것도 차이이다.

〈표 3〉 최저임금 산입, 불산입 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요소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현물급여 (식사, 자동차, 주택 등)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기본급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타 수당 (상여금, 연월차 휴가수당, 실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환불 등) • 성과급, 메상고에 대한 커미션 • 개인 성과수당 및 팀별 성과수당, 생산수당 및 생산성수당 • 연말 보너스 (연말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만 해당) • 휴가비 (휴가비가 지급되는 달에만 해당) • 다목적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미리 부담한 실경비의 환불 • 외식비, 공구비, 세탁비, 출장비 등 • 초과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할증수당 • 연공수당 • 개근수당 • 지역수당 (섬나라, 댐 공사현장, 건설현장 등) •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추위수당, 비위생수당 등) • 기업의 총 생산, 생산성 및 성과에 따른 집단 성과급 (성과보너스) • 교통비 • 근로자들을 기업 번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여금 및 기업의 이윤 분배금

■ 최저임금 적용특례 근로자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근로자이다. 또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도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견습 공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나이와 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직종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17~18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가, 17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이 외에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감시·단속직 근무자 및 택시 운전사에게는 최저임금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장 판매원과 같이 실질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저임금 적용실태

기업규모별 적용실태

최저임금은 정부·지자체·병원 등 공공 관리직 근로자, 농업관련 종사자, 임시직 근로자 등(가사 근로자 및 견습공 제외) 전 직종 총 근로자의 15.1%, 즉 227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시간제 근로자가 97만 명을 차지한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근로자의 30.8%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이다(표 4).

〈표 4〉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 (기업 규모별)

기업 규모 (명)	2006				2005		2004		2003	
	총 근로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	%
1~9	930,000	30.8	430,000	47.5	1,070,000	32.7	1,000,000	31.6	960,000	30.5
10~19	190,000	15.0	60,000	27.3	250,000	17.4	230,000	16.0	220,000	14.8
20~49	310,000	15.8	110,000	31.7	320,000	16.4	310,000	15.5	280,000	14.7
50~99	170,000	14.3	60,000	31.5	180,000	15.2	170,000	13.5	160,000	13.4
100 ~249	170,000	11.9	50,000	27.1	170,000	11.9	160,000	12.0	150,000	11.4
250 ~499	110,000	10.4	40,000	30.4	100,000	9.8	90,000	9.8	90,000	9.3
500~	390,000	7.7	220,000	26.6	390,000	7.7	340,000	7.2	310,000	6.0
전체	2,270,000	15.1	970,000	34.5	2,480,000	16.3	2,300,000	15.3	2,170,000	14.1

업종별 적용실태

업종별로는 호텔 및 레스토랑(44.7%), 소매업 및 가전용품 수리업(28.8%), 식음료·사료·담배 제조업(22.1%)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다.

〈표 5〉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업종별 분류 (2006년 7월 1일)

(단위 : %)

업종별 구분	2006		2005
	해당 업종 총 근로자에 대한 비율	해당 업종 총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비율	해당 업종 총 근로자에 대한 비율
EB : 식음료·사료·담배 제조업	22.1	51.3	23.3
EC : 소비재 산업	11.1	22.9	14.2
ED : 자동차 산업	2.5	4.6	2.2
EE : 항만 철도 건설, 전기 설비 등 기간산업	5.4	14.1	5.5
EF : 옷감·종이·고무·철강·플라스틱 등과 같이 다른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재료 제조업	10.3	19.5	12.2
EG : 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업종	0.5	1.1	0.4
EH : 건설업	11.8	27.3	15.1
EJ : 상업	20.9	40.3	23.5
J1 : 상업 및 자동차 수리 업무	14.0	39.4	15.7
J2 : 소매업	11.0	24.9	12.1
J3 : 도매업 및 가전용품 수리 업무	28.8	42.9	32.7
EK : 운수업	9.5	15.3	11.3
EL : 금융 및 보험업	2.0	4.9	2.9
EM : 부동산업	15.8	28.7	16.1
EN :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4.1	41.3	12.4
N1 : 우편 및 전화 업무	2.0	4.0	1.2
N2 : 상담 및 보조 업무	8.5	31.7	6.5
N3 : 청소 등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활동을 돕는 업무	32.8	56.4	30.5
N4 : 연구 조사 및 개발 업무	0.9	2.8	0.7
EP : 개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가사 근로자 제외)	36.2	51.8	39.1
P1 : 호텔 및 레스토랑	44.7	65.8	50.1
P2 : 여가, 문화, 스포츠 활동	16.6	21.4	13.9
P3 : 개인의 업무를 돌보는 일	34.8	44.6	38.2
EQ : 교육, 건강, 사회사업	10.7	17.0	12.5
ER : 협회 활동	17.5	25.2	19.0
전 체	15.1	34.5	16.3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은 근로감독관이 행하는데, 통상 미신고노동(undeclared work)에 의한 최저임금 위반이 많기 때문에 이와 결부되어 이루어진다. 근로감독관은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징수연합인 URSSAF,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국상공업고용조합인 UNEDIC, 국립직업안정기관인 ANPE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과 공조하여 단속한다. 위반 사업주에게는 벌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인당 1,500유로가 부과되며,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 3,000유로까지 벌금 증액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며, 간혹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다툼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 영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부는 영세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보조는 하지 않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1993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⁵⁾, 1998년부터는 주당 35시간제 도입에 따라 사업주의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대상 근로자를 기존 최저임금 1.3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1.8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경감해 주는 사회보장분담금에는 사회보험(질병, 출산, 상해, 노령, 사망 관련), 가족수당 및 산재보험료가 해당된다. 2005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최고 26%까지 사회보장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율은 200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임금총액의 20.84%, 사업주가 37.74%로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분담금 감면은 노동비용을 크게 감

5)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은 사업주의 노동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저소득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회보장분담금 경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듯이 1999~2005년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7%이지만, 사회보장분담금 지원조치로 인해 최저임금 관련 노동비용 상승률은 2.6%만 증가함으로써 임금관련 노동비용 상승률과의 격차를 0.2%포인트로 낮춘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상승률을 앞질렀지만 1993년부터 시행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동비용이 크게 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⁶⁾ **KLI**

<표 6> 1999~2005년 노동비용의 변화

	1999 ~ 2005
연평균 최저임금 시급 상승률(A)	+ 3.7%
최저임금 관련 노동비용 연평균 상승률(B)	+ 2.8%
연평균 임금 상승률(C)	+ 2.6%
차 이	+ 1.1%P (A-C) + 0.2%P (B-C)

6)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분담금의 감면은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노사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돌아오는 딜레마가 있다. 실제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등 재정지원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대하여 2003년 한해에만 100억 유로 규모의 재정부담 요인이 초래되었다. 2007년 OECD의 프랑스 경제검토보고서는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인한 총비용이 GDP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